

소액 수의계약 안내공고(공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건강나눔 장애인평생교육원 기능보강 공사

나. 위 치 : 목포시 남교동 88-55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내용 : 방수공사, 강의실 리모델링 공사, 냉난방기 설치공사, 조리실 환경개선공사 등

마. 추정금액 : 47,791,000원(※기초금액 47,791,000원)

(단위 : 원)

추정가격(가)	부가가치세(나)	기초금액 (다=가+나)	도급자관급(라) (관급자 관급)	추정금액 (마=다+라)
43,446,364	4,344,636	47,791,000	0 (6,325,000)	47,791,000

2. 입찰참가(견적서 제출) 안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소액 수의계약 총액 견적으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목포시 청렴 계약 이행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접수 개시일시부터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8. 4.(화) 10:00	2026. 8. 7.(금) 10:00	2026. 8. 7.(금) 11:00	개찰용 PC전용

4. 입찰참가(견적서 제출)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시내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관계법령에 의거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천한 추천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등) : 927,373원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설계서 등 견적서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조정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가. 목포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참가(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의 열람은 [인재육성과\(061-270-8532\)](tel:061-270-8532)입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련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사후 정산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아. 본 공사의 ‘A값’

(단위:원)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0	0	0	927,373	0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개찰일시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투찰을 실시하며 개찰시간은 당일 15시, 17시입니다.

다. 낙찰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업체(목포업체 우선)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1) 종합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목포업체 우선) 참여 협조
- 2) 종합공사인 경우, 하도급 계약시 대금 직접지불제 전면 시행
- 3)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등 지역업체 사용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을 하여야합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제5항과 하위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대금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아.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과 공사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제출

자.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카. 낙찰자는 조달청에 신고된 업체 E-mail로 낙찰통보하고,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 목포시 인재육성과 (☎061-270-8532)
입찰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회계과 (☎061-270-3377)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목포시 청렴신고제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목포시 감사실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참여/민원 ⇒ 신고센터 ⇒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 신고전화: 061-270-3218

2026. 8. 3.

목 포 시 재 무 관